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74
----------	-------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임이자 · 김형동 · 지성호
정희용 · 이종성 · 이 용
백종현 · 박대수 · 구자근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물질관리, 시설관리, 영업관리 등 모든 이행사항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기준, 표시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해당 물질들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나 여타 유독물질과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설관리 기준 적용 등 사고예방·대응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용도관리를 위해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관리된다는 측

면이 있음.

이에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며,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안 제2조).
- 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 등을 이행하도록 함.
 - 2)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

사 면제 대상을 마련함.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29조의3까지).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제3장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로 한다.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容器)는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을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로”를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유해화학물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독물질을”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

다)을”로, “유독물질의”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을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학교”를 “제2조제1호의 학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를 “검사기관에서”로, “위한”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시설을”을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

급시설: 정기검사

4.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 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

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4조제6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
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
는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 중 “따른 안전진단”을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
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를 “유해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으로, “제출”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따른”을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제29조의2의 제목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

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제29조의3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제24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27조에 따른”을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을 “해임”으로, “30일 이내”를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선임하여야”를 “재선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임, 퇴직 또는 재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2조”로, “선임”을 “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한다.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48조의2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받아야”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
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제50조제1항제4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받은”을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
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
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임·재선임하거
나 선임·재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
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
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예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제58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신고”로, “수입한”을 “인체등 유해성물질을 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로 한다.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아니한 자 또는”을 “아니하거나”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
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
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⑦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⑧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

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

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⑬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제64조제5호,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⑯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⑱ 향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⑳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㉑ 수도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본문, 같은 호 가목·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㉒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

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㉖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㉗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㉖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p> <p>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p>	<p>제2조(정의) ----- -----.</p> <p>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p> <p>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p> <p>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p> <p>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p> <p>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p>		

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 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 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 물질을 말한다.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것을 말한다.

6. (생략)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
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
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 13.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 14. (생략)

<신설>

6. (현행과 같음)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
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
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
고대비물질을 말한다.

<삭제>

9.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1. ~ 14. (현행과 같음)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폐기
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

4. ~ 7. (생략)

②·③ (생략)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신설>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는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

-----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

1.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

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
----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

유해화학물질등의 -----

-----.

② -----
유해화학물질등-----

--.

③ -----
----- 유해화학물질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유해화

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생략)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생략)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학물질등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려하여 -----

있다.

1. ~ 11. (생략)

③ ~ ⑨ (생략)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생략)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1. ~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 . 다만, 제4항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 .
-----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신 설>

<신 설>

-----.

④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

1. -----

----- 제외한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
----- 제2조제1호의 학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 설>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

-- 검사기관에서 -----

-----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

1. (현행과 같음)
2. -----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
--

⑥ -----

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생략)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② (생략)

<신설>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

1. -----
----- 유해화학물질 -----

2. ----- 유해화학물질 -----

3. -----
유해화학물질을 -----

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
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
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
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
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2.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4. ----- 유해화
학물질-----

5. ----- 유해화
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

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

⑧ -----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1.·2. (생략)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 제4호-----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

---.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

② (생략)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② ~ ④ (생략)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야 한다는 것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

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제24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
-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
선임하여야 ---. <단서 삭제>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p>④ ~ ⑦ (생략)</p>	<p><u>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해임, 퇴직 또는 재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 ----- ----- -----.</p>
<p>1. ~ 8. (생략) <u><신설></u></p>	<p>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u></p>
<p>9. ~ 12. (생략) ② (생략)</p>	<p>9.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그 영업허가를</p>	<p>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u></p>

③ (생략)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인체등유

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6의2. (생략)

<신설>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8. (생략)

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의2. 삭제

10. 11. (생략)

② (생략)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해성물질-----

--

6.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7. -----

-----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

--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현행과 같음)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10.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

· 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생략)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신설>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인체등 유해성물질-----
5. (현행과 같음)
6. -----
-----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임·재선임하거나 선임·재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

② (생 략)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 7. ~ 11. (생 략)

<신 설>

12. · 13.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수수료)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인체등유해성물질---
- 6. ----- 인체등유해성물질-----
- 7.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12. · 1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

- 1. ----- 유해화학물질등 -----

2. ~ 7.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 12. (생략)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 4. (생략)

<신설>

2. ~ 7.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7. -----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8. ~ 12.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신고-----
----- 인체등 유해성물질을 수입한 -----
--

3.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
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4. (생략)

4의2. 삭제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신설>

6. (생략)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

취급한 자

5. -----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
는 영업신고를 -----
--

제64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
업을 한 자

6. (현행과 같음)

7. -----

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자

8.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삭제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생략)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
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
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생략)

③ (생략)

----- 아니하거나 -----
----- 지정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자 선임, 해임, 퇴직 및 재선임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
관하지 아니한 자

8. ~ 11.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3. ----- 유해
화학물질등 -----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1항-----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